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0000부 합의 완료(00.00.00)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의 개정)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인쇄된 서식

은 해당 인쇄분의 소진시까지 개정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1]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 .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구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목	면적 (㎡)	농업 진흥 지역	소유자	경작 구분	경영 이양 방법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급 신청 농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잔여 소유 농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임차 경영 농지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9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 뒤쪽에 첨부서류 및 동의서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제출서류	1. 농지원부 등본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정보 시스템
제출기관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경영이양보조금 담당 직원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 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발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농업진흥지역"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x"로 표시합니다.
- "소유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임대·임차·위탁·사용대·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경영이양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소유농지인 경우: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 공사임대위탁
나. 임차농지인 경우: 경작권종료, 경작권 이양, 경작권포기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한국농어촌공사	→	검토 및 현지조사 한국농어촌공사	→	대상자 선정 심사 한국농어촌공사	→	대상자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	통지
---------------	---	----------------	---	----------------------	---	----------------------	---	-------------------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 .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사용허가신청서
[] 사용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현장조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사용자)	법인 또는 기관(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대표자)		
사용시설	시설명		
	위치		
	사용면적(m ²) (사용수량, ton)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기간		사용개시 예정일	
사용료부과 예정액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경우에만 작성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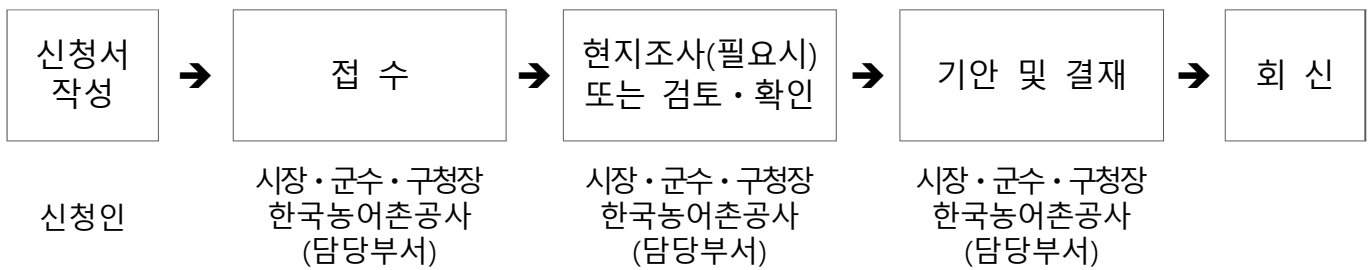
용수의 []사용허가 를(을) 신청합니다.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사용자 또는 신청 기관(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한국농어촌공사

처 리 절 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 . .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기본직접 지불금 대상여부 (O,X)	과거 지급 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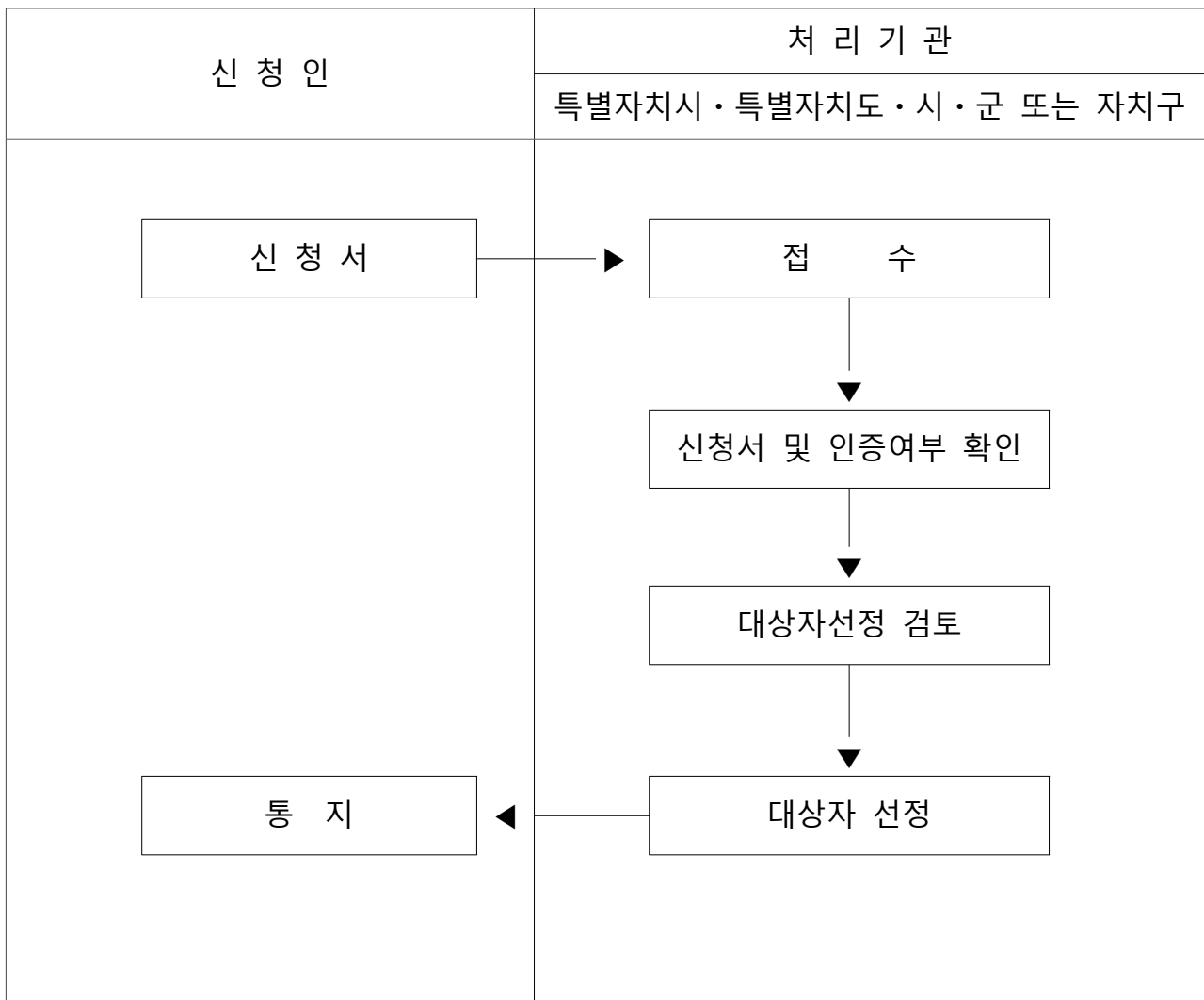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illegible]

(앞쪽)

 **뒤쪽에 첨부서류 및 동의서 있습니다.**

– 12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에 "√"표시)합니다.

[]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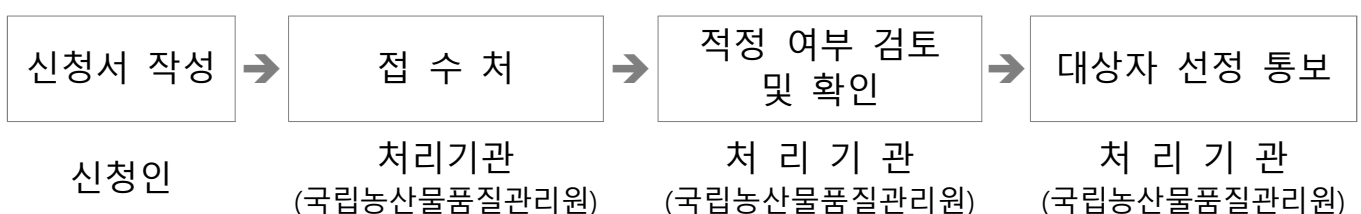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1365